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03
----------	-------

발의연월일 : 2023. 6. 27.

발의자 : 한무경 · 유경준 · 이현승
조은희 · 서일준 · 노용호
권성동 · 서병수 · 권명호
홍석준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은행 등이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채무의 성립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의 예외를 두어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용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은행 등의 대여금 채권처럼 처분문서가 명확하여 채권·채무관계의 성립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실하고, 코로나 긴급대출 원리금의 상환시점 도래로 인해 지급명령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절차 이용의 실익이 크므로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례의 적용대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절차를 생

략하여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943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2호(종전의 제21호) 중 “제20호까지에”를 “제21호까지에”로 한다.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